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2019. 3. 26. 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: 2019년 3월 14일

나. 발 의 자: 김재진 의원 외 3명

다. 회부일자: 2019년 3월 20일

라. 상정일자: 제21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제1차 행정위원회(2019. 3. 22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김재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○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(안 제5 조~제6조)
-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(안 제7

조~제1()조)

○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, 업무위탁,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11 조~제15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최광묵)

- 본 제정 조례안은 최근 인터넷 발달과 독자의 소비패턴 변화 등 도서구매 여건의 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서점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, 독서문화의 진 흥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으로서, 총 14개 조문과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.
- 제정안의 주요내용은.
 -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는, 조례의 목적과 '지역서점'의 정의를 규정함.
 -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.
 - 안 제5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.
 - 안 제6조에서는 지역서점에 대해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고,
 - 안 제7조부터 안 제11조에서는 지역서점위원회의 설치와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.
 - 안 13조에서는 지역서점 활성화에 공적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에 포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.

○ 검토결과.

- 도서정가제 시행 등으로 도서 반값 할인 등과 유통혼란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, 지역서점들은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폐업이 증가하여 지역서점의 수가 점차 감소하고 있음.
- 따라서 가격경쟁력 상실 등으로 어려움을 걷고 있는 관내 중·소 지역서점의 활성화 및 구민들의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구청장이 육성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본 조례 제정은 지역경제 발전 및 지역독서문화 확산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사료되며, 입법체계나 자구

에는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.

- 다만, 지역서점에 대한 실질적이고 실효성있는 지원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지역서점의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체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(김재진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 제89호 발의년월일:2019년 3월 14일

발 의 자 : 김재진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○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경쟁력 강화를 통해 지역 경제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독서문화 증진과 지역문화공간으로서 문화산업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과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구청장의 책무를 정함(안 제4조)
- 나. 지역서점의 지원계획의 수립과 지역서점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(안 제5조 ~ 제6조)
- 다.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근거를 규정함 (안 제7조 ~ 제10조)
- 라.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하여 수당, 업무위탁, 포상 등에 관하여 규정함 (안 제11조 ~ 제15조)

3. 제정안: "별첨"

4. 참고사항

가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
나. 입법예고 (2019. 3. 11. ~ 3. 15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

- 제1조 (목적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소재하는 중·소 지역서점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도모하여 독서문화의 진흥과 균형 있는 지역경제 발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- 제2조 (정의) 이 조례에서 "지역서점"이란 일정기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(이하 "구"라 한다)에 주소와 방문매장 사업장을 두고 불특정다수를 대상으로 영업하고 있는 서점을 말한다.
- 제3조 (적용범위) ①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- ② 이 조례는 제2조에 따른 지역서점에 적용한다.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창업예정자에 대하여는 제6조제1호를 적용할 수 있다.
- 제4조 (구청장의 책무)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(이하 "구청장"이라 한다)은 지역서점의 경영안정 지원을 통한 성장기반 조성을 위하여 지역서점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시책을 적극 발굴하고 추진하여야 한다.
-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시책 추진시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제 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경영하는 지역서점은 우선 지원할 수 있다.
- 제5조 (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) ①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구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계획(이하 "지원계획"이라

한다)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- ② 지원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- 1.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 정책의 기본방향
- 2. 도서구매시 지역서점 우선 구매
- 3. 지역서점 상권 활성화에 관한 사항
- 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
- 제6조 (지역서점 지원)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창업 및 경영지원과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.
- 1. 창업상담, 컨설팅, 교육, 창업 후 운영자금 지원 등에 관한 사업
- 2. 협업사업, 밀집지역 활성화 등 경영개선 지원사업
- 3. 홍보, 디자인 또는 공동브랜드 개발, 판매촉진 등 마케팅 지원사업
- 4. 그 밖에 지역서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업
- 제7조 (지역서점위원회 설치) 구청장은 지역서점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자문하는 '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서점위원회' 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- 1.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한 중요 정책 사항
- 2. 지역서점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
- 3.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
- 4. 지역서점 활성화 지원시책의 점검 및 모니터링
- 5. 지역서점의 사회공헌에 관한 사항

- 6. 그 밖에 위원장이 심의·자문에 부치는 사항
- 제8조 (구성)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-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,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,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는 간사는 서점(도서관) 업무 소관과장으로 한다.
-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.
- 1. 소관업무 담당국장
- 2. 영등포구의회 의원
- 3. 영등포구 구립도서관 관계자
- 4. 대학에서 관련 분야를 담당하는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
- 5. 서점 관련 협회나 단체에서 1년 이상 관련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한 자로 서 해당 협회 또는 단체가 추천한 사람
- 6. 그밖에 위원회의 심의·자문사항과 관련한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
- ④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- 제9조 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.
-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- 제10조 (회의·운영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구청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를 소집한다.
-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-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·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.
- 제11조 (수당 및 여비) 위원회에 출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. 다만,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- 제12조 (업무의 위탁) ① 구청장은 제6조에 대한 업무를 사업추진의 전문성이 있는 산하기관 또는 민간기관·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·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 의 규정을 준용한다.
- 제13조 (포상) 구청장은 구의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뛰어난 개인 또는 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.
- 제14조 (시행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